



: 2018-06-20

## 서울고등법원

### 제33민사부

#### 판 결

사 건	2017나2028588 보상금 등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515341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8. 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0,408,1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0,408,1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2쪽 8~15행)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1)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는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 아래 제20조 제1항 2문을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중재조항에 따른 중재합의를 '이 사건 중재합의'라 한다).

#### "20. 준거법

20. 1 이 계약은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될 것이며, 당사자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분쟁이든, 피고가 재량으로 대한민국에서 원고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 이외에서 재판을 금지한다면 원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상호 동의한 국제 중재 기관의 중재에 따르기로 동의한다.

#### 20. GOVERNING LAW



20. 1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Malaysia and any dispute which cannot be resolved amicably by the parties shall be adjudicated in Malaysia except that C may, at its discretion, institute an action in the Territory against the Distributor. If the laws of the Territory prohibit adjudication except in the Territory, then the Distributor agrees to submit to arbitration in the Territory under the auspices of a mutually agreed up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ssociation."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냉동기, 냉각탑 등을 공급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이를 판매해 왔다.

3) 피고는 2015. 9.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제1심판결서 2쪽 15행의 "갑 제1, 2, 3, 5호증"을 "갑 제1, 2, 3, 5 내지 10, 15, 10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2쪽 맨 아래 행부터 3쪽 아래에서 8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3쪽 9~10행의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를 "이는 D의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영업금지 위반, 영업비밀 침해 내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9행의 "D의 경업금지 위반 행위"를 "D의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경업금지 위반, 영업비밀 침해 내지 부정경쟁행위"로 고쳐 쓴다.

###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 1)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 위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제1항 1문의 말레이시아 법원으로서의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 2) 중재합의 위반

설령 위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제1항 2문의 이 사건 중재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 1)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의 효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4쪽 아래에서 5행부터 5쪽 15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서 5쪽 15행의 "무효이다"를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 2) 중재합의 위반 여부

#### 가) 관련 법리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



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중재법 제9조 제1항).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해당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중재조항의 해석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제1항 2문의 "만약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 외에서 재판을 금지한다면(If the laws of the Territory prohibit adjudication except in the Territory)"은 문언 그대로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의 재판이 금지되는 경우' 즉, 대한민국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소의 기초가 되는 분쟁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중재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제1항은 '피고가 재량으로 대한민국에서 원고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 법원의 관할권만을 인정하고 있어, 문언 자체로 볼 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를 피고로 한정하



고 있을 뿐, 원고가 그와 같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 명의인인 OYL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서 피고 측 스스로 관할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중재에 회부하는 것만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제1항 2문의 "만약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 외에서 재판을 금지한다면"의 의미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합의가 무효라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내용 및 당사자가 위 조항을 두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의도 등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 법원으로서의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가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합의는 이 사건 소의 기초가 되는 분쟁에 적용된다.

#### 다) 이 사건 중재합의의 효력 등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2015. 9. 23.경 종료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2008. 6. 30.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중재합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종료시점 및 이 사건 중재합의의 효력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이 사건 계약의 종료시점에 관하여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제1항 제5호는 "최초 계약기간이란 본 계약서 조항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되지 않은 경우, 계약 유효일로부터 2년까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본 계약서가 서면으로 분명하



계 갱신되지 않은 경우, 최초 계약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제2항). 본 계약서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 발생하는 주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매건으로 간주되며, 피고는 주문 건마다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본 계약서의 만료 또는 해지 후 성사되는 거래, 실적, 상관행 등에 의하여 본 계약서나 대리점권이 갱신되거나 연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제3항). 본 계약서의 만료나 해지 이후에 발생한 판매건은 본 계약서와 관계가 없는 별도의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제4항). 피고가 본 계약서를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은 경우, 대리점은 본 계약서의 만료 또는 해지 시 더 이상 제품과 부품에 대한 피고 공식 대리점이 아님에 동의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06. 7. 1.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후로 하여 이 사건 계약서가 서면으로 갱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27, 1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은 2015. 11.경 원고 측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이 2008년에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의 계약은 개별 건별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갑 제116, 118 내지 1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08. 6. 30. 이후의 거래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리점 코드'를 이용하였는데, 그 대리점 코드가 있어야 피고의 온라인 발주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냉동기와 부품을 주문할 수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9.경 원고를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하여 표창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2017. 4. 27.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이 2015년까지 유지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기본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되었고, 그곳에 서면을 통해서



만 갱신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당사자 사이에 구두약정을 통해 그 서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3, 4, 5항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의 만료 후 이 사건 계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통지에 따라 2015. 9. 23.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서면으로 갱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6. 30. 기간 만료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후의 개별거래약정 역시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이 사건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계약은 2015. 9. 23.경 종료되었으므로, 그 종료시점 이전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중재합의의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2008. 6. 30.경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4항은 "본 계약서가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라도, 자체적 성격에 의해 계속 효력유지에 해당되는 조항은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종료한 이후에도 그로부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도 중재라는 법적 구제절차를 택하기로 한 당사자의 의사는 계속하여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② 분쟁의 해결을 위해 당사자 사이에 강구된 법적 구제수단은 계약관계가 종료한 후에 실현되는 경우도 다수 있는 점, ③ 중재약정은 비록 주된 계약에 중재조항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등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점(중재법 제 17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쟁해결조항이라는 이 사건 중재조항의 특성상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재조항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합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중재조항의 이행가능성 여부

원고는, 중재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중재합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소 각하 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당사자는 OYL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는 이 사건 중재조항의 이행가능성이 없어 소 각하 판결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2006. 7. 1. 이후 피고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상대방임을 인정하였을 뿐 그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는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원고가 OYL과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이 사건 중재조항만은 피고와의 사이에서는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중재조항 또한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서 피고와의 사이에서도 이행가능성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1) 관련 법리

중재법 제3조 제2호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76573 판결 등 참조).

이때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대리상 보상청구의 경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대리상 보상청구는 원고의 주장자체로 보아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 및 효력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합의는 이 부분 청구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조항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제1항이 정한 "당사자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분쟁(any dispute which cannot be resolved amicably by the parties)"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합의는 이 부분 청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① 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에 관한 규정은 1985년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법을 따른 것이고, 위 모델법은 1958년 New York 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과 일치시킨 것으로 평가되므로, 중재법상 중재합의의 의미나 효력 범위의 문제도 국제적인 해석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이 보편화되고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현대 사회의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국제거래 관련 사건의 법해석에서는 우리의 특유한 거래문화나 관행을 중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편적인 국제적 기준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국 판례는, "일괄 해결 추정의 원칙(the presumption of one-stop adjudication)"으로 중재합의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다. 영국 법원의 태도는 양 당사자가 사용한 특정한 표현을 그들의 의도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중재조항의 효력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양 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위한 하나의 해결기관(one forum for dispute resolution)에 합의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적용한다. 즉, 중재조항에 합의한 경우 그들은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기를 의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중재와 소송 양자를 포함한 여러 다른 형태의 분쟁해결방법에 의하여 해결하기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당사자라면 결코 궁극적으로 두 종류의 절차가 존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중재조항이 불분명한 경우 "중재에 유리한 추정(a presumption in favor of arbitration)"을 인정한다. 중재에 맡기려는 당사자의 의사는 분명하여야 하지만, 중재조항의 효력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사실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분쟁이 중재에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이 경우 중재에 유리한 추정(a presumption in favor of arbitration)이 존재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이 중재를 이용할 의사가 아니었다는 분명한 증거(clear evidence)로써 이를 번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Moses Cone 사건[Moses H. Cone Memorial Hospital v. Mercury Construction Corp., 460 U.S. 1(1983)]에서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범위에 대하여 명백히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 한 연방법원은 당사자의 의도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모스 콘 추정의 법칙(Moses Cone Presumption)'은 이후 다수의 판결에 의해 반복 수용되어 중재합의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 대하여 확립된 준칙이라 할 수 있다.

②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요지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한 민국 내에서의 대리점의 지위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의 전 임원인 D이 퇴사(2015. 4. 10.경) 전인 2015. 4. 8.경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 회사인 E를 창립하자, 2015. 9. 23.경 원고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위 E를 피고의 독점 대리점으로 지정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금지 위반, 영업비밀 침해 내지 부정경쟁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국내 대리점 지위를 부여



하여 일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거래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2015. 4. 8.경 원고의 당시 임원인 D이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 회사 E를 설립하도록 협조 등을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금지 위반,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이룬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불법행위책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은 이 사건 계약내용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으로서 이 사건 중재조항이 규정하는 중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대법원도 일찍이, 영업양도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을 중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양도목적물의 숨은 하자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그 본질이 불완전이행책임으로서 본 계약내용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책임인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불법행위책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은 본 계약내용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으로서 위의 중재조항이 규정하는 중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91다17153 판결 참조).

④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증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제1항은 당사자들 사이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분쟁(any dispute)"에 관한 해결방법을 규정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대상 분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중재조항을 둔 당사자의 의도는 분쟁 발생 시 이를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중재에 회부하여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당사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중재조항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일부 분쟁은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분쟁은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어떤 분쟁"이라도 중재에 의하여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⑤ 만일 계약상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중재조항의 대상범위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면,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이 사건 중재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중재조항을 둔 의미가 반감된다. 아울러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기는 계약당사자가 분쟁의 실질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중재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청구를 변형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어 불합리하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의 구성부분인 대리상 보상청구 부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중재조항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해용

                 판사      황의동

                 판사      신용호